|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자산평가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6호  <중화인민공화국 자산평가법>이 2016년 7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習近平)  2016년 7월 2일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평가전문인력  제3장 평가기구  제4장 평가절차  제5장 업계협회  제6장 감독관리  제7장 법률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자산평가 행위를 규율하고 자산평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과 공공이익을 보호하며 자산평가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자산평가(이하 '평가'로 약칭)라 함은 평가기구 및 평가전문인력이 의뢰하에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 기업가치, 자산손실 또는 기타 경제권익을 평정, 판단하고 평가보고서를 발행하는 전문 용역 행위를 지칭한다.  제3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평가대상의 가치 확정이 필요한 경우 자발적으로 평가기구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국유자산 또는 공공이익 등과 연관된 사항이 법률•행정법규에 정해진 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법정(法定)평가'로 약칭) 법에 따라 평가기구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평가기구 및 그 평가전문인력은 업무를 전개함에 있어 법률•행정법규와 평가준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평가기구 및 그 평가전문인력이 법에 의거하여 전개하는 업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평가전문인력은 평가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평가기구에 가입하여야 하며 오로지 하나의 평가기구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업계는 법에 의거하여 전문분야별로 업계협회를 설립하여 자율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의 감독과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제7조 국무원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는 각 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평가업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산하에 구(區)를 두고 있는 시(市)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는 각 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의 평가업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평가전문인력  제8조 평가전문인력은 평가사와 기타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 및 실천경험을 보유한 평가종업인력을 포함한다.  평가사라 함은 평가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평가전문인력을 지칭한다. 국가는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따라 평가사 전문 유형을 확정한다.  제9조 전국적 평가업계협회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평가사 자격 전국통일시험을 조직 및 실시한다.  고등교육기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공민은 평가사 자격 전국통일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제10조 전국적 평가업계협회는 그 웹사이트에 평가사 명단을 공표하여야 하며 실시간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의범죄를 저질렀거나 평가, 재무, 회계, 감사 활동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과실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형벌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2조 평가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의뢰인에게 관련 권리증명서, 재무회계 정보와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공정한 평가절차의 집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권리.  (2) 법에 의거하여 관련 국가기관 또는 기타 조직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 증명서 및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리.  (3) 평가행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의뢰인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의 불법 개입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4) 법에 따라 평가보고서에 서명할 권리.  (5)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권리.  제13조 평가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을 다 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2) 평가준칙을 준수하고 조사 직책을 이행하며 독립적으로 분석 및 판단하고 근면, 신중하게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3) 규정된 계속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능력을 유지 및 강화하여야 한다.  (4) 평가 활동에 사용된 관련 문서, 증명서 및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검토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5) 평가 활동에서 알게된 국가기밀, 상업비밀 및 개인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의뢰인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 및 평가대상과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7) 업계협회의 자율관리를 받고 업계협회의 정관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의무.  제14조 평가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적으로 의뢰를 수락하여 업무에 종사하고 용역비를 수취하는 행위.  (2) 동시에 두개 이상의 평가기구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3) 사기, 회유, 협박 또는 기타 평가전문인력을 폄하, 비방하는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업무를 유치하는 행위.  (4) 타인이 본인의 명의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5) 본인이 수행하지 아니한 업무의 평가보고서에 서명하는 행위.  (6) 계약서에 약정한 범위를 벗어난 보수, 재물을 요구•수취 또는 변칙적으로 요구•수취하거나 기타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7) 허위 평가보고서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평가보고서에 서명하는 행위.  (8) 법률•행정법규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  제3장 평가기구  제15조 평가기구는 법에 따라 파트너십 또는 회사의 형태를 취하여야 하며 평가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평가 업무를 전개하여야 한다.  파트너십 형태의 평가기구는 2명 이상의 평가사를 두어야 하며 파트너의 삼분의 이(2/3) 이상이 3년 이상의 종업경력을 보유한 자로 최근 3년 내에 종업 정지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는 평가사이어야 한다.  회사 형태의 평가기구는 8명 이상의 평가사를 두어야 하고 2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주의 삼분의 이(2/3) 이상이 3년 이상의 종업경력을 보유한 자로 최근 3년 내에 종업 정지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는 평가사이어야 한다.  평가기구가 2명의 파트너 또는 주주로 구성된 경우 2명의 파트너 또는 주주 모두 3년 이상의 종업경력을 보유한 자로 3년 내에 종업 정지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는 평가사이어야 한다.  제16조 평가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등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평가기구는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내에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에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평가행정관리부서는 지체없이 평가기구 비안(備案) 상황을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평가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 객관적, 공정하게 업무를 전개하여야 하고 품질통제제도를 수립 및 보완하여 하며 평가고보서의 객관성, 진실성, 합리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평가기구는 내부관리제도를 수립 및 보완하여 본 기구 평가전문인력의 법률•행정법규 및 평가준칙 준수 상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본 기구 평가전문인력의 종업 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평가기구는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받아야 하며 평가기록 및 관련 상황을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의뢰인이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권리증명서, 재무회계 정보 및 기타 자료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성실하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계약 이행 요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제19조 의뢰인이 허위 평가보고서의 발행을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평가결과에 개입하는 기타의 경우가 있을 경우 평가기구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제20조 평가기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업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기타 기구가 본 기구의 명의로 업무를 전개하도록 허용하거나 기타 기구의 명의를 사칭하여 업무를 전개하는 행위.  (3) 악의적인 가격경쟁, 사례금 지급, 허위홍보 또는 기타 평가기구를 폄하, 비방하는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업무를 유치하는 행위.  (4) 본 기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락하는 행위.  (5) 이익 충돌 쌍방의 의뢰를 각각 수락하여 동일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행위.  (6) 허위 평가보고서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평가보고서를 발행하는 행위.  (7)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인력을 채용 또는 지정하여 평가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행위.  (8) 법률•행정법규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  제21조 평가기구는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職業風險基金)을 적립하거나 자의하에 직업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리스크 예방 매커니즘을 보완할 수 있다.  제4장 평가절차  제22조 의뢰인은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평가기구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제한하거나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평가사항이 두명 이상의 당사자와 연관된 경우 전체 당사자의 합의하여 평가기구에 의뢰한다.  법정(法定)평가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법에 따라 평가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의뢰인은 평가기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여야 한다.  의뢰인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평가기구에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례금을 요구•수취하거나 변칙적으로 요구•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뢰인은 그가 제공한 권리증명서, 재무회계 정보 및 기타 자료의 진실성, 완전성 및 합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24조 수락한 평가 업무에 대하여 평가기구는 최소한 2명의 평가전문인력을 지정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의뢰인은 관련 당사자 및 평가대상과 이해관계에 있는 평가전문인력에게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평가전문인력은 평가 업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평가대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권리증명서, 재무회계 정보 및 기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검증, 분석정리하여 평가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26조 평가전문인력은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평가업무준칙에 따라 하나의 평가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두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평가 결론을 도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기구는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평가보고서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 최소한 2명의 평가전문인력이 서명하고 평가기구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평가기구와 그 평가전문인력은 법에 의거 그가 발행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책임진다.  의뢰인은 평가기구 또는 평가전문인력과 결탁하거나 평가기구 또는 평가전문인력을 사주하여 허위 평가보고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평가기구는 법정(法定)평가 업무를 전개함에 있어 해당 전문 유형의 평가사를 최소한 2명 지정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보고서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 최소한 2명의 평가사가 서명하고 평가기구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 평가기록은 최소한 1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법정(法定)평가 업무의 경우 최소한 3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 의뢰인은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기구에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평가기구 또는 평가전문인력이 불법으로 업무를 전개하였다고 인정하는 의뢰인은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 또는 업계협회에 신고,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 또는 업계협회는 지체없이 조사•처리하고 의뢰인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제32조 의뢰인 또는 평가보고서 사용자는 법률규정 및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사용범위 내에서 평가보고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의뢰인 또는 평가보고서 사용자가 평가보고서를 사용함에 있어 전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평가기구와 평가전문인력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장 업계협회  제33조 평가업계협회는 평가기구와 평가전문인력의 자율적 조직으로 법률•행정법규와 정관에 따라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평가업계는 전문분야별로 전국적 평가업계협회를 설립하고 수요에 따라 지방 평가업계협회를 설립한다.  제34조 평가업계협회의 정관은 회원대표대회가 제정하고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으며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한다.  제35조 평가기구, 평가전문인력은 관련 평가업계협회에 가입하여 평등하게 정관상의 권리를 누리고 정관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관련 업계평가협회는 본 협회에 가입한 평가기구, 평가전문인력의 명단을 공표한다.  제36조 평가업계협회는 다음 각 호의 직책을 이행한다.  (1) 회원 자율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회원에 대한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2) 평가기본준칙에 근거하여 평가업무준칙과 직업도덕준칙을 제정한다.  (3) 회원에 대한 계속교육을 조직 및 실시한다.  (4) 회원 신용기록을 구축하여 회원의 법률•행정법규 및 평가준칙에 대한 준수 상황을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사회에 공개한다.  (5) 회원의 리스크 예방 매커니즘 구축 상황을 검사한다.  (6) 회원에 대한 신고, 제보를 접수하고 회원의 불복신청을 접수하며 회원의 업무 분규를 조정한다.  (7) 회원의 종업 행위를 규율하고 회원이 발행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장려•징계하고 장려•징계 상황을 적시에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한다.  (8) 회원이 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전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9) 법률•행정법규와 규장에 규정한 기타 직책.  제37조 관련 평가업계협회는 의사소통•협력 및 정보공유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수요에 따라 공공행위규범을 제정하며 평가업계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38조 평가업계협회가 수취하는 회원비 기준은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된 후 사회에 공개한다. 회원이 납부하는 회원비 액수를 업계협회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회원비의 수취, 사용은 회원대표대회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으며 그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사로이 나누어 가지거나 횡령,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제6장 감독관리  제39조 국무원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는 평가기본준칙과 평가업계 감독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40조 산하에 구(區)를 두고 있는 시(市)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평가업계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법에 의거하여 평가기구와 평가전문인력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처벌 상황을 적시에 관련 평가업계협회에 통보하며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한다.  제41조 평가행정관리부서는 관련 평가업계협회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협회에 대한 신고, 제보를 지체없이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 평가행정관리부서는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평가기구가 법에 따라 전개하는 업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평가행정관리부서는 평가업계협회, 평가기구와 인력 또는 자금의 관계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직권을 이용하여 평가기구를 위하여 업무를 유치해서는 아니된다.  제7장 법률책임  제44조 평가전문인력이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가 경고를 주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종업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경위가 심각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종업 중지를 명하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1) 사적으로 의뢰를 수락하여 업무에 종사하고 용역비를 수취한 경우.  (2) 동시에 두개 이상의 평가기구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우.  (3) 사기, 회유, 협박 또는 기타 평가전문인력을 폄하, 비방하는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업무를 유치한 경우.  (4) 타인이 본인의 명의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업무에 종사한 경우.  (5) 본인이 수행하지 아니한 업무의 평가보고서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평가보고서에 서명한 경우.  (6) 계약서에 약정한 범위를 벗어난 보수, 재물을 요구•수취 또는 변칙적으로 요구•수취하거나 기타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한 경우.  제45조 평가전문인력이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 평가보고서에 서명한 경우 평가행정관리부서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종업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종업 중지를 명한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물으며 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종신토록 금지한다.  제46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공상등기 절차 없이 평가기구의 명의로 평가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불법활동 중단을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제47조 평가기구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평가행정관리부서가 경고를 주고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하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영업집조를 취소하고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1) 업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한 경우.  (2) 기타 기구가 본 기구의 명의로 업무를 전개하도록 허용하거나 기타 기구의 명의를 사칭하여 업무를 전개한 경우.  (3) 악의적인 가격경쟁, 사례금 지급, 허위홍보 또는 기타 평가기구를 폄하, 비방하는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업무를 유치한 경우.  (4) 본 기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락한 경우.  (5) 이익 충돌 쌍방의 의뢰를 각각 수락하여 동일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경우.  (6) 중대한 누락이 있는 평가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7) 이 법에 규정한 평가기록 보관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8)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인력을 채용 또는 지정하여 평가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9) 본 기구 평가전문인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경우.  평가기구가 이 법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법 제15조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영업 중지를 명하고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제48조 평가기구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 평가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영업집조를 취소하고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9조 평가기구, 평가전문인력이 이 법의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영업 중지, 종업 중지 이외의 처벌을 받은 누계가 1년 내 3회에 도달한 경우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영업 중지 또는 종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 전문평가인력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의뢰인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에게 손실이 초래된 경우 해당 전문평가인력이 소속된 평가기구가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평가기구는 배상책임을 이행한 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행위를 행한 평가전문인력에게 배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 평가기구에 의뢰하여 법정(法定)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한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2조 의뢰인이 법정(法定)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경위가 심각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한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1) 법에 따라 평가기구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사례금을 요구•수취하거나 변칙적으로 사례금을 요구•수취한 경우.  (3) 평가기구 또는 평가사와 결탁하거나 평가기구 또는 평가사를 사주하여 허위평가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한 경우.  (4) 평가기구에 권리증명서, 재무회계 정보와 기타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법률규정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사용범위 내에서 평가보고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 항에 규정된 이외의 의뢰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실이 초래된 경우 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53조 평가업계협회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평가행정관리부서가 경고를 주고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기관리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54조 관련 행정관리부서, 평가업계협회의 업무인력이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리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8장 부칙  제55조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资产评估法**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四十六号  　　《中华人民共和国资产评估法》已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一次会议于2016年7月2日通过，现予公布，自2016年12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主席　习近平  　　2016年7月2日  　　目 录  　　第一章　总则  　　第二章　评估专业人员  　　第三章　评估机构  　　第四章　评估程序  　　第五章　行业协会  　　第六章　监督管理  　　第七章　法律责任  第八章　附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资产评估行为，保护资产评估当事人合法权益和公共利益，促进资产评估行业健康发展，维护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制定本法。  　　第二条　本法所称资产评估（以下称评估），是指评估机构及其评估专业人员根据委托对不动产、动产、无形资产、企业价值、资产损失或者其他经济权益进行评定、估算，并出具评估报告的专业服务行为。  　　第三条　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需要确定评估对象价值的，可以自愿委托评估机构评估。  　　涉及国有资产或者公共利益等事项，法律、行政法规规定需要评估的（以下称法定评估），应当依法委托评估机构评估。  　　第四条　评估机构及其评估专业人员开展业务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评估准则，遵循独立、客观、公正的原则。  　　评估机构及其评估专业人员依法开展业务，受法律保护。  　　第五条　评估专业人员从事评估业务，应当加入评估机构，并且只能在一个评估机构从事业务。  　　第六条　评估行业可以按照专业领域依法设立行业协会，实行自律管理，并接受有关评估行政管理部门的监督和社会监督。  　　第七条　国务院有关评估行政管理部门按照各自职责分工，对评估行业进行监督管理。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评估行政管理部门按照各自职责分工，对本行政区域内的评估行业进行监督管理。  第二章　评估专业人员  　　第八条　评估专业人员包括评估师和其他具有评估专业知识及实践经验的评估从业人员。  　　评估师是指通过评估师资格考试的评估专业人员。国家根据经济社会发展需要确定评估师专业类别。  　　第九条　有关全国性评估行业协会按照国家规定组织实施评估师资格全国统一考试。  　　具有高等院校专科以上学历的公民，可以参加评估师资格全国统一考试。  　　第十条　有关全国性评估行业协会应当在其网站上公布评估师名单，并实时更新。  　　第十一条　因故意犯罪或者在从事评估、财务、会计、审计活动中因过失犯罪而受刑事处罚，自刑罚执行完毕之日起不满五年的人员，不得从事评估业务。  　　第十二条　评估专业人员享有下列权利：  　　（一）要求委托人提供相关的权属证明、财务会计信息和其他资料，以及为执行公允的评估程序所需的必要协助；  　　（二）依法向有关国家机关或者其他组织查阅从事业务所需的文件、证明和资料；  　　（三）拒绝委托人或者其他组织、个人对评估行为和评估结果的非法干预；  　　（四）依法签署评估报告；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权利。  　　第十三条　评估专业人员应当履行下列义务：  　　（一）诚实守信，依法独立、客观、公正从事业务；  　　（二）遵守评估准则，履行调查职责，独立分析估算，勤勉谨慎从事业务；  　　（三）完成规定的继续教育，保持和提高专业能力；  　　（四）对评估活动中使用的有关文件、证明和资料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进行核查和验证；  　　（五）对评估活动中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予以保密；  　　（六）与委托人或者其他相关当事人及评估对象有利害关系的，应当回避；  　　（七）接受行业协会的自律管理，履行行业协会章程规定的义务；  　　（八）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义务。  　　第十四条　评估专业人员不得有下列行为：  　　（一）私自接受委托从事业务、收取费用；  　　（二）同时在两个以上评估机构从事业务；  　　（三）采用欺骗、利诱、胁迫，或者贬损、诋毁其他评估专业人员等不正当手段招揽业务；  （四）允许他人以本人名义从事业务，或者冒用他人名义从事业务；  　　（五）签署本人未承办业务的评估报告；  　　（六）索要、收受或者变相索要、收受合同约定以外的酬金、财物，或者谋取其他不正当利益；  　　（七）签署虚假评估报告或者有重大遗漏的评估报告；  　　（八）违反法律、行政法规的其他行为。  第三章　评估机构  　　第十五条　评估机构应当依法采用合伙或者公司形式，聘用评估专业人员开展评估业务。  　　合伙形式的评估机构，应当有两名以上评估师；其合伙人三分之二以上应当是具有三年以上从业经历且最近三年内未受停止从业处罚的评估师。  　　公司形式的评估机构，应当有八名以上评估师和两名以上股东，其中三分之二以上股东应当是具有三年以上从业经历且最近三年内未受停止从业处罚的评估师。  　　评估机构的合伙人或者股东为两名的，两名合伙人或者股东都应当是具有三年以上从业经历且最近三年内未受停止从业处罚的评估师。  　　第十六条　设立评估机构，应当向工商行政管理部门申请办理登记。评估机构应当自领取营业执照之日起三十日内向有关评估行政管理部门备案。评估行政管理部门应当及时将评估机构备案情况向社会公告。  　　第十七条　评估机构应当依法独立、客观、公正开展业务，建立健全质量控制制度，保证评估报告的客观、真实、合理。  　　评估机构应当建立健全内部管理制度，对本机构的评估专业人员遵守法律、行政法规和评估准则的情况进行监督，并对其从业行为负责。  　　评估机构应当依法接受监督检查，如实提供评估档案以及相关情况。  　　第十八条　委托人拒绝提供或者不如实提供执行评估业务所需的权属证明、财务会计信息和其他资料的，评估机构有权依法拒绝其履行合同的要求。  第十九条　委托人要求出具虚假评估报告或者有其他非法干预评估结果情形的，评估机构有权解除合同。  　　第二十条　评估机构不得有下列行为：  　　（一）利用开展业务之便，谋取不正当利益；  　　（二）允许其他机构以本机构名义开展业务，或者冒用其他机构名义开展业务；  　　（三）以恶性压价、支付回扣、虚假宣传，或者贬损、诋毁其他评估机构等不正当手段招揽业务；  　　（四）受理与自身有利害关系的业务；  　　（五）分别接受利益冲突双方的委托，对同一评估对象进行评估；  　　（六）出具虚假评估报告或者有重大遗漏的评估报告；  　　（七）聘用或者指定不符合本法规定的人员从事评估业务；  　　（八）违反法律、行政法规的其他行为。  　　第二十一条　评估机构根据业务需要建立职业风险基金，或者自愿办理职业责任保险，完善风险防范机制。  第四章　评估程序  第二十二条　委托人有权自主选择符合本法规定的评估机构，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非法限制或者干预。  　　评估事项涉及两个以上当事人的，由全体当事人协商委托评估机构。  　　委托开展法定评估业务，应当依法选择评估机构。  　　第二十三条　委托人应当与评估机构订立委托合同，约定双方的权利和义务。  　　委托人应当按照合同约定向评估机构支付费用，不得索要、收受或者变相索要、收受回扣。  　　委托人应当对其提供的权属证明、财务会计信息和其他资料的真实性、完整性和合法性负责。  　　第二十四条　对受理的评估业务，评估机构应当指定至少两名评估专业人员承办。  　　委托人有权要求与相关当事人及评估对象有利害关系的评估专业人员回避。  　　第二十五条　评估专业人员应当根据评估业务具体情况，对评估对象进行现场调查，收集权属证明、财务会计信息和其他资料并进行核查验证、分析整理，作为评估的依据。  　　第二十六条　评估专业人员应当恰当选择评估方法，除依据评估执业准则只能选择一种评估方法的外，应当选择两种以上评估方法，经综合分析，形成评估结论，编制评估报告。  　　评估机构应当对评估报告进行内部审核。  　　第二十七条　评估报告应当由至少两名承办该项业务的评估专业人员签名并加盖评估机构印章。  　　评估机构及其评估专业人员对其出具的评估报告依法承担责任。  　　委托人不得串通、唆使评估机构或者评估专业人员出具虚假评估报告。  　　第二十八条　评估机构开展法定评估业务，应当指定至少两名相应专业类别的评估师承办，评估报告应当由至少两名承办该项业务的评估师签名并加盖评估机构印章。  　　第二十九条　评估档案的保存期限不少于十五年，属于法定评估业务的，保存期限不少于三十年。  　　第三十条　委托人对评估报告有异议的，可以要求评估机构解释。  　　第三十一条 委托人认为评估机构或者评估专业人员违法开展业务的，可以向有关评估行政管理部门或者行业协会投诉、举报，有关评估行政管理部门或者行业协会应当及时调查处理，并答复委托人。  　　第三十二条　委托人或者评估报告使用人应当按照法律规定和评估报告载明的使用范围使用评估报告。  　　委托人或者评估报告使用人违反前款规定使用评估报告的，评估机构和评估专业人员不承担责任。  第五章　行业协会  　　第三十三条　评估行业协会是评估机构和评估专业人员的自律性组织，依照法律、行政法规和章程实行自律管理。  　　评估行业按照专业领域设立全国性评估行业协会，根据需要设立地方性评估行业协会。  　　第三十四条　评估行业协会的章程由会员代表大会制定，报登记管理机关核准，并报有关评估行政管理部门备案。  　　第三十五条　评估机构、评估专业人员加入有关评估行业协会，平等享有章程规定的权利，履行章程规定的义务。有关评估行业协会公布加入本协会的评估机构、评估专业人员名单。  　　第三十六条　评估行业协会履行下列职责：  　　（一）制定会员自律管理办法，对会员实行自律管理；  　　（二）依据评估基本准则制定评估执业准则和职业道德准则；  　　（三）组织开展会员继续教育；  　　（四）建立会员信用档案，将会员遵守法律、行政法规和评估准则的情况记入信用档案，并向社会公开；  　　（五）检查会员建立风险防范机制的情况；  　　（六）受理对会员的投诉、举报，受理会员的申诉，调解会员执业纠纷；  　　（七）规范会员从业行为，定期对会员出具的评估报告进行检查，按照章程规定对会员给予奖惩，并将奖惩情况及时报告有关评估行政管理部门；  　　（八）保障会员依法开展业务，维护会员合法权益；  　　（九）法律、行政法规和章程规定的其他职责。  　　第三十七条　有关评估行业协会应当建立沟通协作和信息共享机制，根据需要制定共同的行为规范，促进评估行业健康有序发展。  　　第三十八条　评估行业协会收取会员会费的标准，由会员代表大会通过，并向社会公开。不得以会员交纳会费数额作为其在行业协会中担任职务的条件。  　　会费的收取、使用接受会员代表大会和有关部门的监督，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占、私分和挪用。  第六章　监督管理  　　第三十九条　国务院有关评估行政管理部门组织制定评估基本准则和评估行业监督管理办法。  　　第四十条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有关评估行政管理部门依据各自职责，负责监督管理评估行业，对评估机构和评估专业人员的违法行为依法实施行政处罚，将处罚情况及时通报有关评估行业协会，并依法向社会公开。  　　第四十一条　评估行政管理部门对有关评估行业协会实施监督检查，对检查发现的问题和针对协会的投诉、举报，应当及时调查处理。  　　第四十二条　评估行政管理部门不得违反本法规定，对评估机构依法开展业务进行限制。  　　第四十三条　评估行政管理部门不得与评估行业协会、评估机构存在人员或者资金关联，不得利用职权为评估机构招揽业务。  第七章　法律责任  　　第四十四条　评估专业人员违反本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有关评估行政管理部门予以警告，可以责令停止从业六个月以上一年以下；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责令停止从业一年以上五年以下；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私自接受委托从事业务、收取费用的；  　　（二）同时在两个以上评估机构从事业务的；  　　（三）采用欺骗、利诱、胁迫，或者贬损、诋毁其他评估专业人员等不正当手段招揽业务的；  （四）允许他人以本人名义从事业务，或者冒用他人名义从事业务的；  （五）签署本人未承办业务的评估报告或者有重大遗漏的评估报告的；  　　（六）索要、收受或者变相索要、收受合同约定以外的酬金、财物，或者谋取其他不正当利益的。  　　第四十五条　评估专业人员违反本法规定，签署虚假评估报告的，由有关评估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从业两年以上五年以下；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责令停止从业五年以上十年以下；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终身不得从事评估业务。  　　第四十六条　违反本法规定，未经工商登记以评估机构名义从事评估业务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活动；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一倍以上五倍以下罚款。  　　第四十七条　评估机构违反本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有关评估行政管理部门予以警告，可以责令停业一个月以上六个月以下；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一倍以上五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利用开展业务之便，谋取不正当利益的；  　　（二）允许其他机构以本机构名义开展业务，或者冒用其他机构名义开展业务的；  　　（三）以恶性压价、支付回扣、虚假宣传，或者贬损、诋毁其他评估机构等不正当手段招揽业务的；  　　（四）受理与自身有利害关系的业务的；  　　（五）分别接受利益冲突双方的委托，对同一评估对象进行评估的；  　　（六）出具有重大遗漏的评估报告的；  　　（七）未按本法规定的期限保存评估档案的；  （八）聘用或者指定不符合本法规定的人员从事评估业务的；  　　（九）对本机构的评估专业人员疏于管理，造成不良后果的。  评估机构未按本法规定备案或者不符合本法第十五条规定的条件的，由有关评估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责令停业，可以并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  　　第四十八条　评估机构违反本法规定，出具虚假评估报告的，由有关评估行政管理部门责令停业六个月以上一年以下；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一倍以上五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九条　评估机构、评估专业人员在一年内累计三次因违反本法规定受到责令停业、责令停止从业以外处罚的，有关评估行政管理部门可以责令其停业或者停止从业一年以上五年以下。  第五十条　评估专业人员违反本法规定，给委托人或者其他相关当事人造成损失的，由其所在的评估机构依法承担赔偿责任。评估机构履行赔偿责任后，可以向有故意或者重大过失行为的评估专业人员追偿。  第五十一条　违反本法规定，应当委托评估机构进行法定评估而未委托的，由有关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二条　违反本法规定，委托人在法定评估中有下列情形之一的，由有关评估行政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未依法选择评估机构的；  　　（二）索要、收受或者变相索要、收受回扣的；  （三）串通、唆使评估机构或者评估师出具虚假评估报告的；  　　（四）不如实向评估机构提供权属证明、财务会计信息和其他资料的；  （五）未按照法律规定和评估报告载明的使用范围使用评估报告的。  　　前款规定以外的委托人违反本法规定，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第五十三条　评估行业协会违反本法规定的，由有关评估行政管理部门给予警告，责令改正；拒不改正的，可以通报登记管理机关，由其依法给予处罚。  　　第五十四条　有关行政管理部门、评估行业协会工作人员违反本法规定，滥用职权、玩忽职守或者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章　附 则  　　第五十五条　本法自2016年12月1日起施行。 |